

## ‘92 家畜衛生 施策方向

### 金 玉 經\*

#### 1. 서 언

축산물의 급속한 소비증대에 따라 축산업도 괄목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축산형태도 부업규모에서 전 기업규모로 점차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축산물위생 특히 육류중 잔류물질검사 등 가축위생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양적인 생산체제에서 축산식품을 국민에게 생산 공급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질적인 생산체제로서의 전환시점에 와 있어 가축위생시책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현실하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보완대책의 적극적인 강구·추진은 물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국내 축산업 기반 보호·육성에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정부에서 '9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가축위생 시책중 주요한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 2. 축산물 위생 강화

##### 가,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방지

최근의 농·축산물내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로 축산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물질검사 및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농림수산부에서는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장비 및 재료비 지원 등을

통한 검사체계 구축과 축산물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위해 표 1 과 같이 국비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그간 농림수산부에서 제정고시한 “수육 중 잔류물질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을 '92. 1. 16 일자로 폐지하고 보건사회부의 검사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도록 하였으며, 동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시 폐기처분 등 제재조치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의 정착을 위해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홍보 등 대 양축농가 계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나.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은 1차적으로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에 기인된다고 보면, 2차적으로는 도축장, 도계장, 집유장 등 가축을 도살하거나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물작업장에서의 위생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축산물위생처리법상의 축산물작업장 시설관계규정 등의 개선을 위해 '91. 12. 7.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동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작업장내에서 검사원이 철저한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시설(내장 및 지육검사대 보강 등)을 집중적으로 설비토록 하고 축산물 검사원은 지난 '91. 4. 18. 발령된 “수축 및 축산물 검사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검사업무를 실시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90년도부터 3개년에 거쳐 실시된

\* 農林水產部 家畜衛生課長

표 1. 잔류물질검사사업 관련 예산현황

	'91	'92	비 고
검사장비구입지원	15대/750백만원	15대/525백만원	국비 50%,
검사재료비	45..	45..	지방비 50%
검사요원 교육	4..	4..	

“물먹인 쇠고기의 신속검사법 연구”결과에 따라 작업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을 중점적으로 물먹인 쇠고기 검사법의 현장적용을 위해 관계규정을 제정함을 물론 검사에 필요한 장비(NIR system)구입비를 전국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92년 7대(560백만원), ‘93년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다. 축산공해 방지대책 추진

축산업과 관련된 당면사항 중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는 국내외적인 불리한 여건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축산농가가 가장 관심을 두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금년에도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 활용으로 폐수처리 경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법 규제이하 농가 간이정화시설(간이저장조, 텁밥발효돈사, 건조장 등)자금보조(30%) 및 용자(70%)  
→개소당 300만원/6,900개소, 농발기금(207억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신고대상 농가(저장액비화, 텁밥발효돈사, 건조장 등)자금 용자  
→개소당 1,000만원/600개소, 농발기금(60억원)

○ 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분뇨운반장비, 텁밥제조시설 및 공동저장탱크시설자금 보조(70%)  
→총 64개소, 농발기금 및 축진기금(20억원)

○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계분비료공장, 축분발효시설)자금 보조(50%) 및 용자(20%)  
→개소당 7억원/6개소, 농발기금(42억원)

○ 신고대상 이상 농가에 퇴비처리장비 및 비료화

시설자금 용자

→총 120개 농가, 축진기금(20억원)

○ 축산폐수 처리연구 용역 3년차 사업(자원화 활용 방안)실시

→축협, 국립종축원, 농경연 등/축진기금(140백만원)

○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제도 개선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 협의 및 주민 홍보

### 3. 가축방역 업무강화

가축전염병의 발생·전파·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과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추진방향은 만성·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도태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예방주사 및 닦의 혈청검사 등은 국가방역체계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하여 질병감염여부 및 질병발생동향 등을 파악하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속히 방역토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주력하겠으며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45개소에서 4개소를 증설하고 기술인력양성과 정밀검사장비 확보 및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확대를 실시하며 또한 공개업수의사 및 가축방역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축질병예찰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가축질병의 조기검색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한다.

‘9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검진 및 도태사업

-우결핵검진 및 조사확대 : 젖소 255천두, 종축장 한·육우 3,000두

- RT), 도립종축장(소, 돼지) 10천두  
 - 제주도 부루세라 균질사업 : 소, 말, 양, 돼지  
 77천두  
 - 검사방법의 개선으로 검진업무의 효율적 추진  
 ○ 가축혈청검사사업(11종)  
 - 주요 가축전염병의 혈청에 의한 면역항체가 조사로 질병 조기검색  
 - 소(2종), 돼지(3종), 닭(6종)에 대하여 실시  
 ○ 돼지오제스키병 검색(290천두)  
 - 종돈장 및 허가·등록 양돈장의 청정농장지정 유도(71,800두 검진)  
 - 도축장 출하돈에 대한 추적조사 확대(118,200 두 조사)  
 ○ 기생충 구제  
 - 소 간질감염 실태조사(간질검진 100천두)  
 - 소 간질구제(60천두) 및 소 진두기 구제(3,000 천두)  
 ○ 젖소의 유방염검사  
 - 젖소의 낸령별, 지역별, 원인균별 감염실태조사와 치료약제의 감수성 시험 및 결과 통보(31 천두)  
 · 유방염 방역대책에 활용  
 ○ 진도견 방역  
 - 진도견의 순종번식과 보호를 위한 특별병역실시  
 -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개체별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 양계협회에서 계균혈청검사사업 실시를 위한 자체실험실 설치 운영(사업비 185백만원)  
 - 종계장(220개소)에 대하여 주요 닭 전염병 6 종 5천수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 가축위생연구소의 기술협조 및 검사결과에 의한 자율방역대책 추진

#### 4. 수출입 동물검역 강화

동물검역의 목적은 해외로 부터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 철저 등 위생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보면, 수출검역시 상대국의 위생조건 및 국제규정이행으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공신력의 제고는 수입 개방화와 교역상대국의 다변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도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규정을 개정,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은 동물검역소 국내 제류장 검역을 원칙으로 하고, 검역소 축사 이외의 장소에 대한 검역시행장 지정을 지양하는 한편,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30일전에 동물수입계획서를 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도록 하여 검역수용능력을 감안 검역시기, 장소, 물량 등을 사전조정함으로써 검역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입육류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와 병원성 미생물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하므로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조치한 바가 있다.

또한 금년도에도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비 571백만원을 들어 합성항균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HPLC 등 10종 18대의 정밀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정보수집을 위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수입국에 대한 가축위생실태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할 것으로, 검역통계 등 가축위생 전산망을 조기 에 구축하여 가축위생정보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5. 수의약사 감시강화 및 수의사 업무 활성화

##### 가. 수의약사 감시강화

동물약품의 유통질서확립 및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를 방지키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동물약품제조업소 및 수출입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애시도시스 실시(연 4회이상)하여 시설 및 품질관리상황 점검, 제품의 수거·검정의뢰 등을 통한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동록증(허가증)개시 상태, 약사 또는 관리약사의 근무상황, 유통중인 제품의 수거 등을 통한 감시를 추진할 계획인바, 감시결과 위

-부루세라검진 및 조사확대 : 젖소 110천두(M-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한 제조시설 및 검사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여 우수 동물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수거·검정의뢰를 통하여 유통중인 제품의 성분함량 등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우수한 약품이 유통·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나. 수의사 업무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 수의학제는 외국과 달라(FAO·WHO 및 세계 수의사회장 권고 교육기간은 4,700여 시간에 교육연한은 5~6년간이며, 우리나라 는 년간에 2,800여 시간에 불과)이의 시정을 위해 '90년도에 수의분야의 사회기여도 증대 추세와 선진수의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수의학과 교육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동 문제를 약대 및 법대의 사안과 함께 심의중에 있다.

수의직과 유사직종인 의무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유지로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축산물 위생 및 유해잔류물질 등의 철저한 검사를 위한 우수검사인력 확보, UR 등을 대비, 수입 동·축산물의 검역을 위한 우수검역인력의 확보, 도축 및 검역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한 수의직력 공무원의 수당규정(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 할 계획하에 '91년말 동 사안을 총무처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 수의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 6.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동물약품 제조업은 '62년 유한양행에 동물약품부의 발족을 시작하여 '63년 약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65년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의

공포와 함께 체제를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현재 60개 업체에 2,188개 품목을 생산하고 년간 약 1,600억원(완제품)의 매출을 올리는 팔목할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동물약품 제조업은 '84년 말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85년 말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으로 설립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71년에 설립된 동물약품협회는 해산된 바가 있다.

동물약품업계는 축산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외국의 다국적기업에서 국내시장 개척에 협안이 되어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또한 매약에 의한 자가치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와 축산물내 잔류로 인한 국민보건위생 위해문제 등 점차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1. 12. 31자 약사법으로 개정하여 동물약품에 대한 관련조항을 약사법 부칙에서 본칙으로 조정하고 축산식품내 잔류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져올 동물약품에 대한 사용자 규제조항 신설 및 동물약품 등의 범위에 동물용 의약부외품을 추가하여 동물약품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또한 동물약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검정면제 등 자체품질 관리토록 하였고, 앞으로 '91년 실시한 약효재평가가 사업결과를 토대로 효능, 안전성 등을 재심사 조정할 계획이며, 약사법 개정에 따른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과 시설기준령을 개정 보완하고 동물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사용자 규제 및 잔류방지 홍보강화와 아울러 수입개방에 대비한 원료합성이나 신제품 개발분야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동물약품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방침이다.